

「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5. 11. 19(목) 평창군수(자치행정과장)

나. 회부일자 : 2015. 11. 20(금)

다. 상정일자 : 2015. 12. 7(월) 제215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자치행정과장 장동기)

○ 상위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이용섭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협의회 위원 추가 및 근거 없는 인용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

○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6명”을 “3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7호로 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평창소방서장

제2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강릉보훈지청장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5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”를 “협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